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The Korean Society of Lipid and Atherosclerosis
우 04157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3 마포아크로타워 707호
TEL: 02-3272-5330 / FAX: 02-3272-5331 / E-mail: ksla@lipid.or.kr

2022. 3. 14.

문서번호 : 지질동맥 2022-15
수　　신 : 회원 제위
제　　목 : 2022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신진학술연구비 신청 안내의 건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22년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신진학술연구비 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고자 하니 첨부한 규정을 참고하시고 제7조 연구비 지원신청방법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본 학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평가는 최근 3년간(2019.1~2021.12) 국내에서 수행한 연구를 국내외 권위 있는 학술지에 책임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 성과의 우수성과 상호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또한 본 학회의 활동 내역과 학술지인 Journal of Lipid and Atherosclerosis (JLA)의 게재논문 및 인용논문 편수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자격 사항은 규정 제3조를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5. ▶ 대상 및 상금내역 : 2명 이내, 1인당 1,000만 원

6. ▶ 신청마감일 : 2022년 5월 29일(일)

7. ▶ 신청서류 : 신청서(이력서, 연구계획서, 정회원 추천서 포함), 연구업적(논문의 목록 및 pdf 파일 또는 실적물 별책 각 1부) 및 기타 증빙자료

8. ▶ 보내실 곳 : ksla-2@lipid.or.kr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1.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신진학술연구비 규정 1부.
2.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신진학술연구비 신청서 1부.
3. 연구업적목록 1부. 끝.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회 장 김명아

이사장 최동훈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신진학술연구비 규정

제정: 2017년 9월 9일
개정: 2018년 4월 16일
개정 : 2019년 1월 23일
개정 : 2019년 9월 18일
개정 : 2019년 11월 20일
개정 : 2020년 3월 18일
개정: 2020년 5월 20일
개정: 2021년 7월 21일

제 1 조 (명칭)
본 연구비의 명칭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신진학술연구비'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신진학술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지원 대상 및 연구비 규모)
연구비 지원 대상자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정회원을 1년 이상 유지한 만 45세 이하 회원으로**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연구비의 규모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2021.7.21>**

제 4 조 (연구비 관리와 운영)
(1) 연구비 지원 과제 선정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상선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상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상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① 연구비 지원 과제의 선정
② 연구비 지원에 따른 제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분
③ 연구비 및 연구 관리에 필요한 기타 사항

제 5 조 (연구비 지원의 기본 원칙)

(1) 연구비의 지원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젊은 회원의 학술연구 활동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비 지원 과제의 선정은 공모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비 지원 과제의 연구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4) 연구시작일은 위탁연구용역 계약서(별첨) 상의 계약일로 한다.

제 6 조 (연구비 지원 신청 자격)

(1) 연구기간 중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출장을 계획하고 있거나, 3개월 이상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2) 연구비 지원은 1회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연구비 지원 신청 방법)

연구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정하는 날까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신진학술연구비 신청서

(2) 최근 3년간의 연구업적 및 기타 증빙자료

(3) 연구계획서

(4) 추천서 1통: 전공의, 전임의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정회원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주도적으로 수행할 연구임을 증명한다는 보증의 말이 포함된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연구비 지원 과제의 선정 절차 및 기준)

(1) 연구비 지원 과제는 상선정위원회의 서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2) 연구비 지원 과제 선정에 있어서 주요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연구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② 지원자의 연구 수행 능력 및 연구 업적

③ 연구 목적의 명료성 및 연구의 필요성

④ 연구 방법의 타당성

⑤ 연구 결과의 공헌도 및 학문 발전에의 기여도

제 9 조 (연구비 지급 방법)

(1)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연구자의 소속 기관과 소정의 계약서(별첨)를 이용한 계약을 체결한 후, 최대한 조속히 연구자 소속기관 연구비 운영처로 소정의 연구비를 입금한다.

(2) 기관에 지불하는 간접비 및 부가가치세는 기 결정 연구비 총액에 포함되며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제 10 조 (계약서)

계약서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의 별첨 양식 혹은 연구자의 소속기관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 11 조 (연구자 의무)

(1) 연구자는 해당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해 학술대회에서 발표해야 한다.

(2) 연구자는 해당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 관련된 내용의 원저를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지 Journal of Lipid and Atherosclerosis (JLA)에 연구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고해야 한다.

(3) 연구자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지 Journal of Lipid and Atherosclerosis (JLA)에 원저 게재시에 "This study was supported by funding from the Korean Society of Lipid and Atherosclerosis"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비 정산 내용을 포함하는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연구계획 변경 및 보고 기한의 연장)
연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 기간, 연구 내용 또는 제목 등 연구계획을 중대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연구 중단 시 보고)
연구자가 연구 수행 중 사고,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연구를 3개월 이상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 14 조 (연구 중단 및 연구비 회수)
연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선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연구 수행에 있어서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연구비의 지급 목적에 있어서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연구 지원 신청서 등의 기재 사항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연구 결과의 학술대회 발표 및 학회지 투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연구비 수혜 자격을 상실한 경우
(6) 기타 1년 이상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7) 연구 종료 후 적절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 15 조 (연구비의 집행 관리)
연구비의 집행, 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구자 소속기관의 위탁계약에 따른다.

제 16 조 (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발효한다.